

금요 양성 2024년 10월 18일 FAQ #9

단위 형제회와 나누시오

우리 회헌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자주 대두되는 질문들: 이번 주부터 다음 몇 주동안 섬기는 지도자 지침서 2010년 개정판에 제시된 몇 가지 질문들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겠다. 평의회나 형제회에서 동일한 질문들이 자주 제기된다. 회헌을 잘 아는 것이 각 등급의 형제회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. 전체 문서의 최신판 완역본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오:

<https://ciofs.info/library/official-documents/> or <https://www.secularfranciscansusa.org/the-general-constitutions-of-the-secular-franciscan-order-2000/>

+ 자발적인 잠정적 퇴회나 정지 처분에 대한 규정은 어떠한가? [회헌 57조]

회헌 57조: 자발적인 퇴회나 정지 처분

1. 자발적인 퇴회나 형제회로부터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재입회를 청원할 수 있다.
2. 평의회는 재입회 청원자의 사유를 심사한 다음 퇴회나 정지 처분을 결정했던 이유가 극복되었는지를 평가하고, 긍정적인 경우 그를 재입회시키고 형제회의 장부에 그 결정을 명기해야 한다.

+ 위의 회헌 57을 읽은 후에:

- 짝이나 형제회와 함께 **자발적인 잠정적 퇴회** 후에 형제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토론해 보시오.
- 평의회는 해당 회원이 형제회로 복귀해도 되는지에 대해 왜 토의를 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 토론해 보시오.
- 형제회로부터 **정지 처분**을 받은 후에 복귀하고자 하는 이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[이런 이유들은 자발적 잠정적 퇴회 후에 복귀하고자 하는 이유들과 어떻게 다를까요?]
- 형제회로부터 정지 처분 후에 회원을 재입회시키는 결정을 내릴 때에 평의회는 어떤 요소들을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시오.

해당 회원이나 평의회 양쪽 다 성령의 활동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. 이 결정들은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들을 미리 토의해 놓으면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미래의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.

결정적 처분 (58조 전부를 읽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) https://www.secularfranciscansusa.org/wp-content/uploads/2020/Dec-updated-Translation_OFS-General-Constitutions-s1469.pdf)

회칙 58조 (중점사항)

58조 1항: 회원이 형제회로부터 결정적(영구적) 퇴회를 원하는 경우 밟아야 할 중요한 절차에 주목하십시오:

-- 서면으로 회장에게 알린다. 회장과 영적 보조자와 대화한다. 평의회에게 서면으로 확정한다. 평의회는 서면으로 그 회원에게 알린다. 퇴회는 장부와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된다 (**결정적 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하시오**)

+ 회원이 영구적으로 형제회로부터 퇴회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?

+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식별을 해야 합니까?

58.2 형제회로부터의 제명 (조항의 이부분은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)

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들은 "중대한 것이라야 하는데 외적이고, 고의적이며, 사법적으로 증명된 것이야 함"을 주목해야 한다. [주석 19에 "외적"이라는 것은 "**형제회 밖**"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.]

+58.2항에 따르면, 어떤 상황에서 회원이 **형제회로부터 제명**되는가?

58조 3 항과 4항의 나머지 부분을 찬찬히 잘 읽어 보시오.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하면 지구 형제회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시오.